

# 방화관리규정

제 정	1996. 3.
개 정	1999. 9.
개 정	2007. 11.
개 정	2013. 1.

## 제 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우송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에서의 방화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화재로 인한 인적 및 물적 피해를 예방 또는 경감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 (규정의 준수)** 본 대학의 교직원 모두는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조직과 책임)** ①화재예방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본 대학에 방화관리자를 두며, 각 건물에는 건물 화기정책임자와 방화관리자가 지명한 건물 화기 부 책임자를 두고, 각 실에는 건물 화기책임자가 지명한 실 화기정부책임자를 둔다.

②퇴근시부터 다음 출근시까지의 방화관리의 책임은 지역별 당직자가 지며, 각 건물의 화기책임은 각 건물 당직자가 책임을 진다.

③본 대학 소방시설물의 공사와 정비업무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총무처 관리과(2013.1.1.)에 관리직원을 둔다.

## 제 2장 방화관리 임무의 분담

**제4조 (방화관리자의 임무)** ①지역별 방화관리자는 10월말(2013.1.1.)까지 다음해의 소방계획을 작성하여 자체 보관한다.

②지역별 방화관리자는 전항의 소방계획에 의한 소화, 통보 및 피난 등의 훈련을 실시한다.

③지역별 방화관리자는 효율적인 방화관리를 위하여 교육훈련시에 관계소방기관에 대하여 방화검열을 요청하고 교육훈련의 지도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지역별 방화관리자는 소방시설물의 안전운용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을 입안하여 해당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제5조 (건물 화기책임자의 임무)** 건물 화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화관리를 위하여 건물내의 각실 화기정부책임자를 지명, 지휘 및 통솔한다.
2. 소방용설비 및 피난시설의 기능보전과 상태유지에 힘쓰며,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한다.
3. 건물내의 청소와 비품,기자재 관리에 철저히 하여 가연물질이 방치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4. 건물내의 난방설비의 신설(난로 포함)과 개조는 방화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5. 건물내의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과 전기기구의 사용은 방화 관리자에게 신고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6. 건물내의 소방시설과 피난시설의 위치 및 사용법을 교직원에게 숙지시킨다.
7. 화재 발생시 소방기관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통보를 하기 위하여 관할경찰서 또는 소방서 등 관

계기관에의 연락방법을 각실 화기책임자에게 숙지시킨다.

8. 각 실 난로의 사용수칙(사용자의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난로취급자 및 사용자에게 숙지 시킨다.
9. 건물내의 유지와 가연물질은 지정된 소각장에서 처리한다.
10. 연료(유류)는 방화관리자가 지정 및 허가한 장소에서만 저장한다.
11. 방화관리자의 지시사항을 각실 화기책임자에게 시달하며, 건물내의 방화관리사의 특수한 조건이나 사항을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하고 소방법 제9조 및 소방법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제6조 (건물 화기부책임자의 임무)** 건물 화기부 책임자는 건물 화기책임자를 보좌하고 위임된 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 (각 실 화기책임자의 임무)** 각실 화기책임자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실내의 비품 및 기자재와 청소를 철저히 하여 가연 물질이 방치되어 있지 아니 하도록 한다.
2. 방화관리자가 허락한 난방기만을 가설하여 사용한다.
3. 인화성 및 발화성 물질의 불법 무단 휴대 입실을 절대 금하게 한다.
4. 실내에서의 위험물의 사용 및 보관과 전기기구의 사용은 방화관리자의 허락을 받아야 사용한다.

**제8조 (실화기부책임자의 임무)** 실화기부책임자는 실화기책임자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제9조 (소방위원회 구성)** 방화관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1. 심의사항
  - 가. 소방계획수립
  - 나. 방화관리업무전반
  - 다. 소방교육훈련 및 소방시설 설치 보수
  - 라. 취약지구 방화관리 중점 검토
2. 소방대책위원회는 위원장1인(총장), 부위원장1인(부총장), 위원6인(지역방화관리자6인)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례회는 매분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 수시로 소집.개최한다.
4. 위원회는 방화관리업무 전반에 관하여 심의하며 심의 결정된 사항은 지체 없이 시행한다.

### 제 3장 교육훈련

**제10조 (교육훈련)** 본 대학의 교직원(용역업체근로자 포함)은 소방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기교육은 년 1 회, 수시교육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한다.

### 제 4장 소방시설물 및 공사

**제11조 (소방시설)** 각종 소방시설물의 설치, 보수 및 운용은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시행다.

**제12조 (시공)** 소방시설물에 관한 공사는 방화관리자 감독하에 시공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물에 관한 공사가 완성된 경우에는 방화관리자가 검사하여 관리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인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안전점검)** 본 대학의 모든 전기를 사용하는 기계.기구의 신설.이설.사용시는 방화관리자의 안전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 (보고)** 본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화재의 위험성이 있거나 시설물의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지역별 방화관리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제15조 (순시, 점검 및 측정) 총무처 총무과장(2013.1.1.)은 소방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순시, 점검, 측정 및 시설물 전반의 안전 점검을 건물별로 하고 그 결과를 매일 관리처장을 경유하여 방화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시, 점검 및 측정 결과, 법령으로 정한 기준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 는 총무처 총무과장(2013.1.1.)은 지체 없이 수선, 개조 또는 이설 하거나 혹은 그 사용을 일시 정지 또는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 5장 상벌 및 변상

제16조 (상벌 및 변상) 방화관리자는 방화관리와 소화활동에 공로가 있는 교직원의 표창을 상실할 있다. 방화관리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방화관리를 게을리함으로써 등을 발생하게 하거나 또는 진화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교직원에 대하여는 그 처벌 및 변상을 상실할 수 있다.

### 제 6장 준 용

제17조 (준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방화관리상 필요한 사항은 소방법 및 소방법시행령에 의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6.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1999.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7. 1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 1부터 시행한다.